

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지침

제1장 . 목 적

- 1.1 친환경상품 구매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삶과 환경의 질 (質)을 유지하는데 있다 .
- 1.2 기업소비자로서 친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사용의 장려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적 참여하고 ,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제2장 . 적용범위

- 2.1 환경부 자발적 협약 참여 전 사업장에서 업무 및 제조활동 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토목 ,건축 ,전기 ,화학 ,설비 ,MRO(사무용품 및소모품) ,생활용품 등의 친환경상품 또는 대체가 가능한 물품에 한한다 .
- 2.2 필요한 경우 친환경상품을 제조 , 공급 , 조달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.

제3장 용어의 정의

- 3.1 "친환경상품" 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우수 (KS마크)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.
 - 3.1.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는 「환경마크 상품」
 - 3.1.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규칙과 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「우수재활용 상품」
 - 3.1.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하는 「에너지 효율표시 1~2 등급 제품 ,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, 고효율 에너지기자재」
 - 3.1.4 수입물품중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환경 Label 획득제품 등 「친환경 인증 물품」
 - 3.1.5 기타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물품 중 별도의 회사 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한다 .
 - 3.1.5.1 ROHS의 6대물질 ,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
 - 3.1.5.2 포장감량 및 용기회수가 가능한 폐기물 저감물품
 - 3.1.5.3 환경표지 (TYPE II , TYPE III) 인증물품

- 3.1.5.4 생태계 , 인체에 유해한 영향과 사용 · 폐기과정에서 대기 · 수계로 배출되는 독성물질 ,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은 물품
- 3.1.5.5 오존층 파괴 , 산성화 ,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현저히 적은 물품
- 3.1.5.6 에너지 소모 및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물품
- 3.2 "친환경상품 우선 구매"라 함은 위 항목에서 정한 물품을 동일한 구매 품목에 우선하여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.
- 3.3 "친환경상품 구매 자발적 협약"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개발 ,생산 ,구매 ,소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조성하고자 정부와 맺은 협약을 말한다 .

제4장 . 의 무

4.1 환경 부서

- 4.1.1 본 지침의 전략 , 계획 수립 ,예산확보 ,정보제공 ,성과 분석 ,지침개정
- 4.1.2 구매관련자 (공급자 ,구매자)등의 구매확산을 위한 홍보 ,교육
- 4.1.3 정부 및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항 협조 및 이행 , 보고
- 4.1.4 친환경상품의 단계적인 구매품목 확대 ,운영
- 4.1.5 친환경상품 대체 가능품목 발굴 및 공급사를 통한 친환경상품 인증 취득 독려 ,지원
- 4.1.6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및 개발 .
- 4.1.7 기타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

4.2 구매 ,사용부서 (자)

- 4.2.1 주관부서의 요청 (교육참여 ,홍보 ,성과작성)에 적극 협조
- 4.2.2 물품 구입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
- 4.2.3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친환경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지원요청 .

4.3 공급사 (조달 ,물류 포함)

- 4.3.1 회사의 친환경상품 주관부서의 요청사항 발생시 적극 협조
- 4.3.2 물품구매 계약시 친환경상품 여부의 관련증빙 첨부 .
- 4.3.3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통보 .
- 4.3.4 공급상품 중 환경정보 (친환경상품 인증취소 ,신규인증 등)가 변경

되었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

4.3.5 친환경상품 공급사 on-off Line을 통한 홍보 시 "친환경상품"의 표식을 하여 구매자가 우선 구매 및 인식을 하도록 조치.

4.4 친환경상품 구매 절차는 (별첨 1)에 따른다.

제5장 . 녹색구매 자율협약 이행

全 임직원은 회사가 정부와 체결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협약」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(별표 1) 친환경 상품 구매절차

